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44호 (2014-23) 발행일 : 2014. 06. 13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건강한 공공정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적용의 과제: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 정책평가 도구인 건강영향평가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행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건강영향평가수행을 권고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그동안 추진되어 온 미국의 건강영향평가 사례를 보면 주로 환경 및 에너지, 교통, 농업,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레벨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지금까지 미국에서 시행된 건강영향평가의 성과는 지역 사회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질병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최은진
생활습관병연구센터 연구위원

1. 들어가며

- 건강영향평가는 각종 공공정책이나 개발사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구이며,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의 주요 사업이기도 함

○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건강영향평가는 민주주의(Democracy), 형평성(Equity), 환경 친화적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윤리적 근거 사용(Ethical Use of Evidence)의 4가지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음.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모든 정책의 개발전에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¹⁾

1) www.who.int/hia/en

-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들과 같이 미국은 건강영향평가 연구가 활발한 국가이지만, 국가적 수준에서 추진하게 된 것은 2000년대 후반부터임. 2012년 제1회 National Health Impact Assessment Meeting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주도하면서 본격적인 연방정부주도의 건강영향평가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음.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미연방 보건국(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해당하는 Healthy People 2020 정책을 수행할 때 건강영향평가를 중요한 기획 도구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 바 있음.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에서도 교통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정책이나 사업이 지역사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²⁾. 또한 연방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지역사회 시범 사업 및 건강영향평가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따른 자금 및 자원을 지원하고 있음

○미연방정부의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은 2010년 5월 백악관 내 영부인 산하 어린이 비만 대책위원회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나타났음³⁾. 백악관 어린이 비만 대책위원회가 제출한 리포트에는 어린이 비만을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이 여러 가지 소개되었는데, 각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발달시킬 때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권고하였음. 연방정부는 건강영향평가 접근방법 및 도구의 개발, 모범 사례를 발전시키는 것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제안한 바 있음

2. 건강영향평가의 추진유형

- 미국 연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건강영향평가사업은 아직 법제도가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The PEW Charitable Trusts 등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예산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2007년에 27건의 건강영향평가사업이 2013년에는 275개로 증가하였음⁴⁾
- 미국에서 법제도에 따라서 또는 법제도와 상관없이 지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건강영향평가만을 위한 사업이 많으나, 다른 건강영향지원사업에 의해서도 많이 실시됨⁵⁾

[그림 1] 미국 건강영향평가의 실시 동향(1999~2013년)



자료: Health Impact Project(2013). <http://www.healthimpactproject.org/hia/us>

2) <http://www.cdc.gov/healthyplaces/hia.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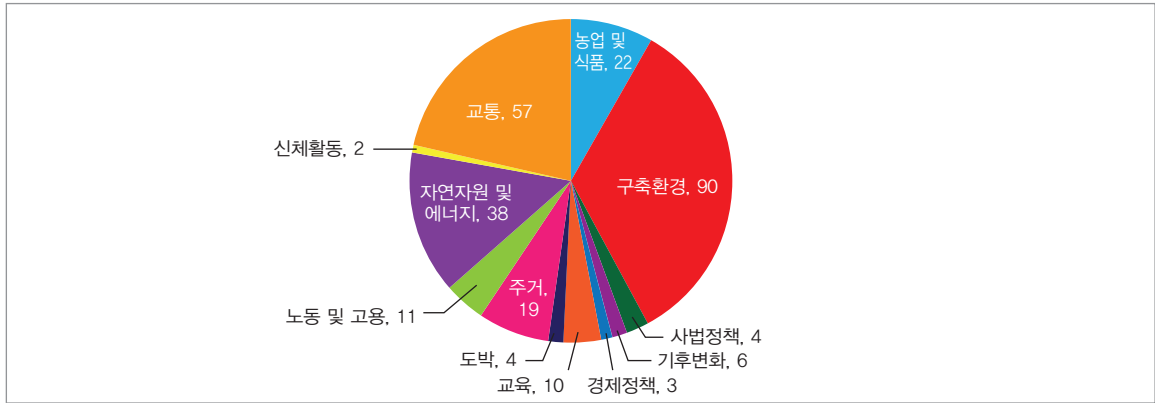
3) http://www.letsmove.gov/sites/letsmove.gov/files/TaskForce_on_Childhood_Obesity_May2010_FullReport.pdf

4) Health Impact Project Fact Sheet(2013). <http://www.healthimpactproject.org/body/Health-Impact-fact-calling-card-09-22-13.pdf>

5) Health Impact Project(2013). <http://www.healthimpactproject.org/hia/us>

- 199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건강영향평가 사례 266건을 분석한 결과 주된 분야를 보면, 구축환경(Built Environment)분야가 90건으로 가장 많은 사례가 있고, 교통분야(Transportation)가 57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사례를 차지하며, 천연자원 및 에너지(Natural Resources and Energy)분야가 38건, 농업 및 식품(Agriculture and Food)분야가 22건 등이었음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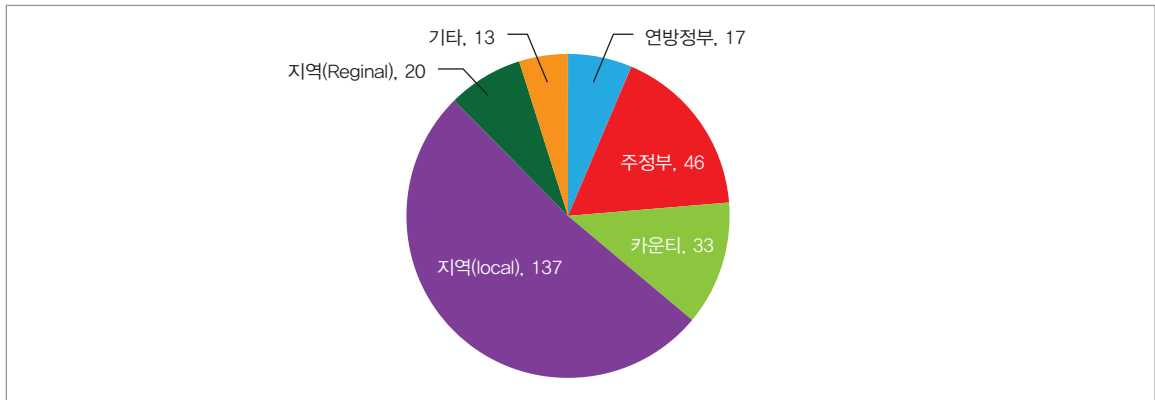
[그림 2] 건강영향평가수행 사업의 주요 분야(1999~2013년) (단위: 개수)



자료: Health Impact Project(2013). <http://www.healthimpactproject.org/hia/us>

- 건강영향평가가 적용된 정책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 지역(local)수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state), 카운티(county)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이 중 연방(federal)정부차원의 적용선수는 총 17건으로 의사결정 단계가 결정되지 않은 사례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그림 3] 건강영향평가 적용의 수준 (단위: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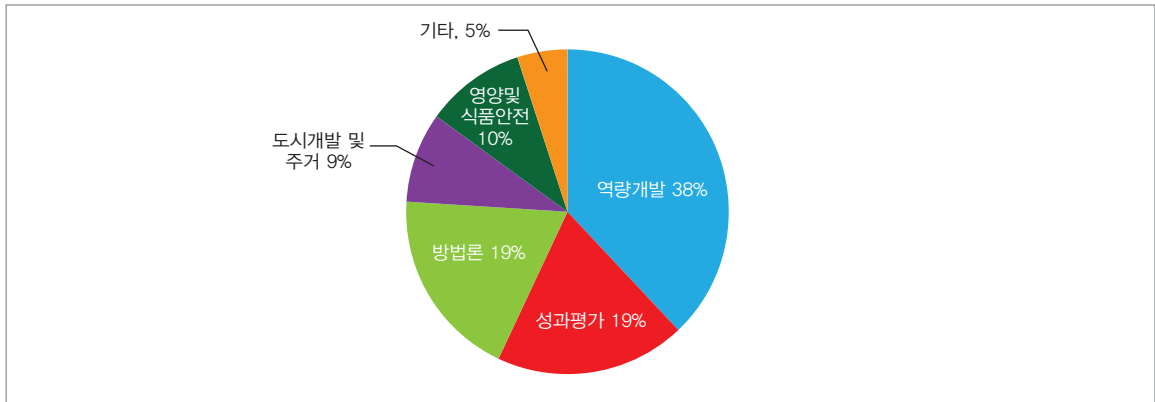


자료: Health Impact Project(2013). <http://www.healthimpactproject.org/hia/us>

- 미국내 최근 건강영향평가논문의 주된 주제를 보면 건강영향평가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는 건강영향평가 수행인력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학계와 연계하여 전문화되고 표준화된 건강영향평가의 기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기회를 지원하고 있음

6) 최은진, 노정미, 여지영, 정지원(2012).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동향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4] 미국내 건강영향평가 연구논문의 주요 분야



주: 논문의 검색기간: 2009년부터 2012년 6월

자료: 최은진, 노정미, 여지영, 정지원(2012).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동향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보건부문에서 추진된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동향

■ 연방정부차원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노력

○ 미국 연방정부의 법제도적 기반은 없으나 정책적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질병관리본부의 건강영향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음. 연방정부차원에서 규제 방식, 자금지원, 시행 및 규제 담당 기관 선정 등의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건강영향평가법령이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

○ 건강영향평가를 법률화하려는 움직임이 전문가들에 의해 계속되어지고 있음.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연방법으로 의무화하려는 움직임과 노력은 미국 내에서 계속되어지고 있으며, 2013년 초반까지 최소한 7개주 내 의회와 미국상원의회에 법률안이 제출되었음. United States Legislative Information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있음. 건강영향평가 제도 관련 근거 법령은 2006년에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되었고, 지속적으로 상원과 하원의원에 의해 제안되고 있음. 2013년 알래스카 상원의원에 의해 질병관리본부가 북극해 연안 지역의 건강영향평가를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제출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는 않았음⁷⁾. 그러나 주정부 차원에서 보다 지역적인 차원에서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주정부 차원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동향

○ 미국은 각 주(state)가 자치권을 갖는 나라이기 때문에 각 주(state)별로 법령을 제정해 그 법을 자치권 내에서 시행할 수 있음. 2000년대 후반부터 7개 주에서 건강영향평가 입법화를 추진하였음

- 건강영향평가가 법제화되는 형태는 건강한 장소, 교통,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 등의 법안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알 수 있음

7) Library of Congress(2013). Better Health in Artic Act. S.271 113th Congress (2013–2014). United States Legislative Information. <http://beta.congress.gov/bill/113th-congress/senate-bill/271?q=%7B%22search%22%3A%5B%22health+impact+assessment%22%5D%7D>.
<http://beta.congress.gov/search?q=%7B%22congress%22%3A%22113%22%2C%22source%22%3A%22legislation%22%2C%22search%22%3A%22health%20impact%20assessment%22%7D>

〈표 1〉 주(state)별 건강영향평가 법률화 추진 근거 법령

구분	법령명	연도	내용
캘리포니아	California Health Places Act (AB1472)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2.8 million(회계연도 2009-2010까지) · 주(state)보건 담당자 (the Public Health Officer)가 유관기관협조실무자 (interagency working group)를 형성하여 환경보건 모범사례, 근거, 프로그램 및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하게함. · 캘리포니아주 보건국(CA State Public Health Department) 내에 건강영향평가 관련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 보건 담당자가 유관기관협조실무자 협력하여 토지사용, 주택 및 교통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도록 함.
메릴랜드	Maryland Healthy Places Act (H.R.1196)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매년 \$80,000~\$100,000 · 주(state)보건당국 장관의 지휘아래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기위한 시범 사업을 설립하여 자금 및 기술 지원을 하도록 요구함. · 건강영향평가 시행 범위 토지 사용 정책에 따른 건강영향을 측정함. · 환경영향진술서 또는 진행되고 있는 혹은 앞으로 진행될 환경 관련 사업의 정책 평가서에 건강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조사함. · 제안된 정책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 방안을 비교 및 설명함. · 해당 정책의 환경영향서술서의 조사와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기여함.
매사추세츠	An Act to Create Environmental Justice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떠한 사업이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칠 경우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사업이 환경과 관련된 공고문이 아닐지라도 10사람 이상이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 · 법안에 건강영향평가 절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시민여론 반영 및 시민단체 참여 ·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Healthy Transportation Compact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사추세츠 교통당국(M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과 보건당국 (MA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이 협력하여 입법화를 진행함. · 교통 관련 사업 및 정책을 계획할 때, 교통 개발 계획부서, 행정부서, 보건 부서에서 협력하여 건강영향평가에 시행하도록 함.
미네소타	Minnesota Healthy Communities Act (H.R. 1424)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증진기금을 책정하여 영구적 보건증진프로그램을 설립하도록 함. · 보건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에 자금을 지원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워싱턴	An Act relating to Health Impact Assessment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state) 법령 혹은 예산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을 검토하도록 함. · 2007년과 2009년 사이 총6건의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함. (http://sboh.wa.gov/OurWork/HealthImpactReviews.aspx)
	Replacement of SR520 (SB 6099)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0번 고속도로 다리 및 카폴레인 교체에 관한 법령. ·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함.
뉴멕시코	New Mexico Health Impact Assessment Bill (SB 256)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함. · 건강영향평가에 필요한 예산은 건강보험업자 연간 과세를 통해 지원하도록 요구함.
웨스트 버지니아	West Virginia Senate Bill 558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웨스트버지니아 환경보호국이 공기 또는 수질 오염도 기준치를 변경할 경우, 이것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환경보호국이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

자료: UCLA Health Impact Assessment Clearinghouse, <http://www.hiaguide.org/legislation> Health Impact Partners, <http://www.humanimpact.org/hia-policy>

■ 보건 이외의 분야의 건강영향평가 적용

○ 연방 정부의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에서 건강영향평가 시행을 지원하고 있음

- NEPA와 그와 상응하는 주(state)법령은 주로 건강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위임된 환경영향보고서 내에 추가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환경 및 에너지, 교통, 농업,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 네가지 주요 분야별 건강영향평가 관련 22개 주의 법령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법령으로 의무화는 경우가 약 45%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음⁸⁾

4. 건강영향평가와 다른 영향평가의 관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제도 추진은 세계2차대전 무렵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1969년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가 입법화 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 하였음.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평가가 마무리 된 후에 환경영향보고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EIS)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모든 미연방기관들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자세히 기록한 EIS를 제출해야 함⁹⁾

○ 연방법에 의해 입법화된 환경영향평가 내 건강의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분량이 매우 적고, 건강 관련 이해관계자들 및 전문가들의 참여가 아주 낮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임¹⁰⁾. 그 이유는 두 가지 인데, 첫째, 인간의 건강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NEPA에 의해 입법화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건강영향에 관련된 조항이 많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건강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 분석에 사용함으로써 건강영향 부분에 대한 평가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둘째,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오랫동안 시행되었고, 이미 입법화된 정책이므로 건강영향평가를 더 발전시키고 보급시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안에서 시행하는 것이 별도의 독립법인 없는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음.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과 연구추세로 볼때, 환경영향평가 내에 건강영향평가를 시행을 확대 의무화할 가능성이 있음

■ 건강위해성 평가

○ 미연방 환경보호국(EPA)에서는 건강위해성평가(Health Risk Assessment)를 “현재 또는 미래에, 오염 환경에 있는 위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 건강영향의 현상과 확률을 측정하는 절차”¹¹⁾라고 정의하였음. EPA는 건강위해성평가를 통하여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부정적 화학물질을 관리하여 인체와 생태계에 유해한 물질 사용을 규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추구함

○ 건강위해성평가는 화학물질 및 다른 물질에 대한 노출에 관하여 정량적 측정 방법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지 않고, 특정 환경 관련 화학물질에 제한되어 있음. 건강위해성평가의 결과를 어떤 특정 물질에 관한 노출에 의한 건강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건강영향평가 시행 시 사용하도록 질병관리본부가 권고한 바 있음¹²⁾

8) Health Impact Project(2011). HIA in the United States. Retrieved from <http://www.healthimpactproject.org/hia/us>.

9) Cole, B., Wilhelm, M. Long P., Fielding, J. and Kominski, G.(2004). Prospects for Health Impact Assessment in the United States: New and Improv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r Something Different? Journal of Health Politics, Policy and Law. 29(6), pp.1153-1186.

10) Cole, B., Wilhelm, M. Long P., Fielding, J. and Kominski, G.(2004). Prospects for Health Impact Assessment in the United States: New and Improv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r Something Different? Journal of Health Politics, Policy and Law. 29(6), pp.1153-1186.

11) <http://epa.gov/riskassessment/health-risk.htm>

12)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CDC) 참조. <http://www.cdc.gov/healthyplaces/relationship.htm>

〈표 2〉 영향평가별 특성과 제한점

	건강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강위해성평가
절차	스크리닝 스코핑 평가(공공의 참여) 권고 리포팅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평가의 평가	스크리닝 스코핑 예측 및 대안 초안 작성 기관 및 공공의 평가 최종 보고서 제출 결정사항 기록 기관의 조치 모니터링 및 관리 감사	계획 및 스코핑 위험요소 발견 용량-반응 평가 노출정도 평가 위험요소 특성화
제한점	· 평가의 질 - 다른 영향평가에 비해 발전된 기간이 짧음 · 건강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해서 기준이 애매함 ·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건강 영향평가 시행이 필요함 ·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이 제한되어 있음 · 법제도화의 초기단계이며, 시행평가 기관의 선정, 평가 기준 등의 표준화가 필요함	· 평가서가 길고, 복잡하며 사용하기 어려움 · 공공 참여도가 제한되어 있고, 각 기관 간 대립구도가 형성됨 · 절차가 실질적이지 못함 · 대체적으로 평가는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고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평가는 미비함 ·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가 제한되어 있고, 건강관련 전문가들의 참여가 낮음	· 건강에 대한 범위가 포괄적이지 못함 · 공공 참여도가 제한되어 있음

자료: The U.S. EPA. http://www.epa.gov/risk_assessment/basicinformation.htm

5. 시사점

- 미국은 아직까지 건강영향평가를 연방정부 법에 의해 정식으로 제도화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과 같은 연방정부기관에서 지역보건당국, 주정부, 재단 또는 지역사회단체에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필요한 교육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예를 들어, Health Impact Project, UCLA Health Impact Assessment Center, Health Impact Partners 와 같은 공공 비영리 단체에서 건강영향평가의 개발과 정책 발전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여 건강영향평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¹³⁾
- 미국의 건강영향평가 정책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음. 연방법에 의한 건강영향평가 입법화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상당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시행을 권고하는 추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수준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즉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건강영향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지금까지 미국에서 시행된 건강영향평가의 사례는 지역 사회에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13)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CDC) 참조. <http://www.cdc.gov/healthyplaces/relationship.htm>

○알래스카 동북부지역 국가석유개발 사업의 건강영향평가사업사례는 EPA가 시행한 첫 번째 통합 건강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사례이며, 통합 영향평가의 모범 사례임. 이 지역 석유개발사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영향평가에 추가하도록 연방정부에 설득하여, 협정을 이끌어 내었음. 이 노력의 결과로 식품 및 환경오염 모니터링이 더 발전되고, 건강 및 수확물 지표 모니터링이 증가하게 되었음. 이 외에도 트리니티 플라자 아파트 재건축 사업, 샌프란시스코 동부지역 용도구역 재정비, 알래스카 북부 처키해 석유 가스 개발권 입찰, 북극해 연안지역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권 허용 사례 등의 통합 건강/환경영향평가가 실행되었음¹⁴⁾

■ 우리나라에 건강영향평가가 법제화된 것은 2009년 환경보건법제정에서 찾을 수 있고,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 환경보건법 제13조 건강영향항목의 추가 및 평가에 대한 내용에서 건강영향평가의 범위를 개발사업 및 일부 시설 설치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¹⁵⁾. 우리나라에는 60개의 건강도시가 있고, 건강영향평가는 건강도시 지자체 정부의 주요 과업이기도 하지만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제한점이 있음¹⁶⁾

○환경보건법하에서의 건강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는데,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여야 이 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음. 2010년에서 2013년 상반기까지 실시된 221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중 건강영향평가 작성사업은 총 128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¹⁷⁾

○건강영향평가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제적 교류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지식정보구축 활성화가 필요함

○건강영향평가를 국가적 차원, 지역적 차원에서 확대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강영향평가를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연구가 필요함

14) 김동진, 채희란, 김공현, 김진희, 김현두(2012). 지방자치단체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 환경보건법 제13조 건강영향항목의 추가 및 평가; 대상사업은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정 처리시설 설치시에 한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제한된 규정을 가지고 있음.

16) 박윤형, 남은우, 김건엽, 고광욱, 장원기, 이부옥, 강은정, 김진희(2011). 건강도시유형별 표준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한국건강증진재단.

17) 이영수(2013). 제2차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포럼.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분석(2013. 6. 28),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집필자 | 최은진 (생활습관병연구센터 연구위원) 문의 | 02-380-8249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